



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공지드립니다.

중국 에너지법

1 배경

- 중국의 〈에너지법〉은 2024년 11월 9일 발표,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
 - 2024년 4월 1차 심의, 9월 2차 심의, 11월 3차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8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
 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,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으로 국가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확대. 특히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〈에너지법〉 제정 필요성 부각
 - 〈에너지법〉은 총 9장 80개 조항으로 구성. 총칙, 에너지 관련 계획, 에너지 개발과 이용, 에너지 시장 시스템, 에너지 비축과 비상대응,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, 감독관리, 법률책임, 부칙 등이 포함
 - 에너지 자원관리 강화, 저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 추진,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, 중국 에너지 영역의 기본법으로 에너지 발전 및 안전보장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

2 주요 내용

1) 에너지 관리 체계에 ‘수소에너지’ 자원 포함

- ‘석탄, 석유, 천연가스, 원자력, 수력, 풍력, 태양광, 바이오매스, 지열 발전, 해양에너지, 전력, 열에너지, 수소에너지’를 에너지자원으로 정의(제2조)
-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수소를 포함시키며 수소산업 발전 추진을 제시(제33조)
- 수소를 에너지자원으로 개발 및 이용, 비상대응·비축 등 감독관리 시행, 수소에너지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명시

2)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

- 국가에너지국을 에너지사업 총괄 최상위 기관으로 지정(제12조)
- 국가에너지국은 전국 에너지사업을 총괄, 현(縣)급 이상의 에너지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시행, 불법행위 단속
- 중앙 및 지방 정책 통합, 중앙정부에 에너지 계획 및 수립 권한 부여(제16조)
- 에너지 총괄계획은 국가에너지국이 제정, 분야별 에너지 계획은 국가에너지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 제정, 지역별 에너지 계획은 국가에너지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성(省)급 정부와 공동 제정

3)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

- 비화석에너지 전환, 저탄소 및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가속화(제3조, 5조, 22조)
- 국가는 재생 에너지자원을 우선 개발 및 활용하며 비화석에너지 이용 비중을 단계별로 향상
- 2022년 전까지 중국은 ‘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’ 및 ‘에너지 소비 강도 관리’를 병행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감소
- * **비화석에너지** : 화석연료(석탄, 석유, 천연가스 등)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는 에너지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
- * **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** : 국가 및 지역별로 연간 에너지 소비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
- * **에너지 소비 강도 관리** : GDP당 소비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가리키며, 경제 활동에서 에너지 효율을 추진. 강도가 낮을수록 효율성이 높음

- 하지만, 이러한 정책은 청정에너지와 비청정энер지를 구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개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‘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’를 ‘탄소배출 총량’ 통제로 변경하고 이를 〈에너지법〉으로 법제화함
- 이는 탄소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녹색 발전 전략과 일치
-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 수립 : 에너지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신·재생에너지 최소 이용 비중 목표 공동 제정
- *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(RPS, 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: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전력 생산 및 공급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, 수력, 바이오매스 등)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도임
- 에너지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비화석 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비화석 에너지원 개발 및 사용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, 이를 대중에 공개

4)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가격 체계 개편

- 에너지 시장체제 구축(제41조~42조)
 - 전국적으로 통일된 석탄, 전력, 석유, 천연가스 시장체제 구축
- 에너지 가격 책정(제45조)
 -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에너지의 자원 현황, 원가, 시장수급, 지속발전 가능 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가격을 책정

5) 에너지 효율성 관리 강화

- 에너지 고효율성 추진(제33조~34조)
 - 수소에너지 개발 및 수소 에너지산업 발전 촉진
 -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, 최종 에너지 소비의 청정화, 저탄소화, 고효율성 수준 제고
 - 재생에너지 녹색 전력증서(GEC :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) 제도를 실시하여 녹색 에너지 소비촉진 체계 구축

* **녹색 전력증서** : 국가에너지국이 발행하는 재생에너지(풍력, 태양광 등)로 생산된 1MWh당 발급되는 전자인증서를 가리킴

- **탄소배출 계량 의무화(제35조)**

- 에너지기업 및 에너지사용 업체의 탄소배출 계량 의무화 : 에너지기업 및 에너지 사용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 측정 장비 보유 및 사용
-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: 단계별로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방식, 시간, 수량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

6) 에너지 보안 강화

- **에너지 비축 및 비상 관리체계 강화(제7조, 47조, 48조, 54조)**

- 국가는 에너지 생산, 공급, 판매 체계를 보완하고, 에너지 비축제도 및 에너지 비상관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공급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공급 보장
- 에너지 비축체계 구축 강화, 정부 및 기업비축 병행 : 에너지 공급 부족·중단 및 기타 에너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, 정부는 권한에 따라 비상조치 시행
- 에너지 비상사태의 경우, 정부는 ①에너지 수급 정보 발표, ②에너지 생산·운송·공급 시행, ③관련 에너지 제품, 에너지 비축 시설, 에너지 운송 수단 등 사용 가능, ④가격 통제, ⑤에너지 비축 시행, ⑥공급 우선순위 권한 부여 등 조치 가능 등

- **맞대응 조치 명시(제78조)**

-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 또는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,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상황에 따라 상응한 보복 조치 가능

- **에너지 안전 관련 규정(제79조)**

- 중국 외 다른 나라에 설립한 조직, 기관, 기업, 매체 및 개인이 중국의 국가에너지 안전을 해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

7) 국제협력 강화

- 국제협력 강화(제10조, 46조)
 -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국제투자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

8) 감독체제 및 법적책임 강화

- 감독관리 체계 구축(제65조~66조)
 - 현금 이상 정부의 에너지 관리 부서는 분업하여 에너지 감독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
 -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 관련 업체의 신용체계 구축, 신용기록 제도 수립
- 법적 책임 강화(제70조~73조)
 - 전기, 가스 등 에너지 공급을 취급하는 기업이 에너지 공급 거부·가격 무단인상 시 행정처분 시행
 - 에너지 공급 업체가 에너지 수송서비스 무단거부 시 벌금 부과
 - 에너지 관련 업체가 정보 미공개·허위보고를 할 경우, 10~20만 위안 벌금 부과
 - 에너지 업무 취급 기업, 관련 단체, 조직, 개인이 비축 의무 위반 시 개인의 경우 1~5만 위안 과태료 부과, 기업의 경우 10~50만 위안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, 허가증 폐지 조치 시행 가능

3 시사점

1) 에너지 분야 근거법,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강화

- 〈전력법〉, 〈석탄법〉, 〈재생에너지법〉 등 에너지 관련 다양한 개별법 및 행정법규 가운데 〈에너지법〉이 에너지 분야 발전 전략, 전체 계획 등 관련 법체계에서 리더십 역할 법률(统领性法律)로 자리매김
 - * 리더십 역할 법률(统领性法律) : 특정 영역의 근본법으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핵심 법률
- 〈에너지법〉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개별법률, 행정법규, 규범이 정비되어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관련 법률체계 구축 전망

- 국가에너지국과 성급 에너지 주관부서는 분야별로 에너지자원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에너지 관리의 체계적 발전 기대
- 〈에너지법〉은 재생에너지 우선 개발 및 탄소배출 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비화석에너지 자원 대체를 가속화하고 풍력,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자원의 친환경 저탄소 촉진

2) 외국기업에 대한 영향

- 〈에너지법〉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을 강조, 에너지 시장 질서를 법에 따라 규제하고 외국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, 법인 및 비법인 단체 등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동등한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. 이를 통한 내외자 동등 대우 및 법적 보호 명시
- 한편, 중국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행할 경우 맞대응조치 조항 규정에 따른 상호 보복 가능성 대비 필요